민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홍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636 발의연월일: 2024. 9. 4.

발 의 자: 박홍근·김영호·김기현

이수진 • 박상혁 • 조정식

권칠승 · 남인순 · 김남근

이건태 • 한정애 • 김민석

염태영 · 임광현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농림축산식품부의 "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"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 비율이 28.2%인 것으로 나타남. 동물과 동거 하는 인구의 증가 등 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동물을 생명체로 보 호하고 비인도적 처우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꾸준히 제기되 고 있음.

이후 21대 국회에서 정부안을 포함하여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요내용으로 담은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, 구체적인 논의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닌 감각이 있는 생명체임을 명시하여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있어 생명 존중과 동물 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려는 것임(안 제98조의2 신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8조의2(동물의 법적 지위) ① 동물은 물건이 아닌 감각이 있는 생명체이다.

② 동물에 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98조의2(동물의 법적 지위) ①
	동물은 물건이 아닌 감각이 있
	<u>는 생명체이다.</u>
	② 동물에 대하여는 법률에 특
	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
	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
	용한다.